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보건대학교 학칙 제17조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각 입학전형의 모든 업무는 적법성,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각 입학전형의 모든 업무는 보건전문기술대학원 당해년도 모집요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은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된 입학전형 계획 및 모집요강을 준수한다.

④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관련 위원회) ① 입학전형에 관련해서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한다.

② 각 위원회의 규정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규정을 따른다.

③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는 각 입학전형에 문제 및 이의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위원장은 문제 및 이의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심의회의를 소집하여 문제 및 이의를 해결한다.

④ 모집요강 및 전형 관리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보건대학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입학전형 계획 수립) ① 광주보건대학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의 입학전형 계획, 관련 학칙 및 지침, 학과의 의견 수립 결과, 전 학년도 입학전형 결과분석 자료, 교직원 및 신입생 설문조사 결과분석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립한다.

②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회의를 통과하고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공시 및 홍보) ①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은 모집요강, 각종 홍보물, 입학안내 홈 페이지, 각종 입시 홍보 등에 전 구성원, 수험생 및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홍보한다.


②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의 공시 및 홍보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

제6조(원서접수) ①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로 진행한다.

② 원서접수 계획은 전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회람하고 또한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한다.

③ 우편접수는 원서 접수기간 동안 우편접수 지원자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분류하고 검토한 후 접수한다.

④ 방문접수는 원서 접수기간 동안 지원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원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접수한다.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2/11

제7조(사정회의) ① 합격자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 사정회의를 통과한 후 발표하고, 위원회의 사정회의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입학전형이 보건전문기술대학원 모집요강 및 입학전형 관리 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한다.

제8조(합격자 발표 및 등록) ① 합격자 및 예비후보순위는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개별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③ 합격자는 우리대학에서 정한 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합격증 및 등록금 고지서는 보건전문기술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제9조(충원 합격) ①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성적(예비후보)순으로 추가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연락 불통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가 진다).

② 결원 보충을 위한 충원 및 추가접수는 입학년도 2월 말까지 자율로 실시한다.

③ 추가 모집 지원자의 면접 실시 여부는 각 과정별 운영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0조(전형방법)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입생 입학모집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 사정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규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 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2. 합격자는 심사 성적(학사학위 성적, 면접심사 점수,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3. 성적 산출시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판독이 어렵거나 없는 학위과정의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5. 전문학사 졸업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편입학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성적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전문학사 전공으로 학사 전공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인정받은 학위과정이 있는 경우 성적 산출은  $\{(A\text{대학 취득학점} \times \text{평균평점}) + (B\text{대학 취득학점} \times \text{평균평점})\} / (A\text{대학 취득학점} + B\text{대학 취득학점})$ 으로 한다.


이 때, 성적 평균평점 만점이 4.5가 아닌 경우  $(4.5 \times \text{취득평균평점}) / \text{취득평균평점}$ 의 만점으로 환산한다.

② 면접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면접심사는 전임교수 3인으로 면접관을 구성하고, 면접관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책임교수를 포함한다.

2. 면접심사 점수는 면접관 전원의 합산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3. 면접심사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3/11

4. 면접심사 시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입생 면접심사 평가지(별지 제1호)를 사용하여 면접 점수를 기입한다. 면접 종료 후, 각 면접관이 면접심사지를 취합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신입생 면접심사 결과지(별지 제2호)를 작성하고,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가산점 처리

1.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표 2)를 따른다.

④ 동점자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른다.

1. 관련 산업체 재직기간이 긴 지원자
2.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지원자
3. 학사학위 과정 중 취득 학점이 많은 지원자
4. 외국어 성적 가산점 고득점자
5. 위 기준에 의해서도 총점 동점자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⑤ 불합격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자격 미달자
2. 제출 서류 미제출자 또는 제출 포기자
3. 면접심사 결시자 및 과락 평가자
4. 기타 입시 관련 부정행위자

제11조(지원자격)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생의 공통자격은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인자로 하며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 경력기준은 입학년도 2월 말까지로 하며, 산업체 재직 관련분야는 (별표 3)을 따른다.

제12조(제출서류) ①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생의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
2. 학사학위 졸업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표)  
단, 전문학사 졸업(예정)자는 학부와 전공심화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4. 산업체 재직(경력) 증명서
5. 해당 학과 면허증 사본
6. 가산점 관련 서류(해당자)

② 서류 제출기간은 원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단, 서류제출 완료 후 추가 보충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다.

제13조(유의사항) ① 일단 접수된 입학서류는 변경 및 반환,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입학서류 취소(변경) 사유서(별지 제3호)를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4/11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력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조회 동의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가 진다.

⑤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전형 관리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⑥ 추후 입학전형 관련 주요사항이 발생될 경우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4조(장학금) ① 학생에게 졸업 시까지 매 학기 등록금의 최대 50%까지 전문기술석사과정 장학금을 지원가능하며, 지급기준 및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기간은 학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방식은 후지급(학생 본인명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 사정에 따라 선감면도 가능하다.

③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동일 재원의 경우 이중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활비성 또는 포상 성격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본 장학금은 글로컬30 프로젝트 운영 종료 시까지 하며, 그 이후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5/11

(별표 1) 면접심사 기준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배 점
논리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사전달 능력	20점
전문성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10점
관심도	융합지원 분야 관심도	20점
책임감	학습 계획에 대한 의지	20점
인적성	윤리성, 가치관, 직업관, 대인관계, 성격, 업무 적응력, 리더십	20점
태도	면접자세, 예절	10점
<b>합 계</b>		<b>100점</b>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6/11

(별표 2)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제출 서류

구분	부여기준	배점
경력	재직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3점
	재직경력 10년 이상 ~ 20년 미만	4점
	재직경력 20년 이상 ~	5점
실적 및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분야 연구 참여 실적 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또는 국가 과제 결과보고서, 전공관련 학회지 논문</li> </ul> </li> <li>• 해당 분야 특허 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증 사본 1부</li> </ul> </li> </ul>	5점
외국어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어 : TOEIC 500~599점, TEPS 450~499점, TOEFL iBT 60~69점, TEPS-S&amp;W 40~44점, TOEIC-S 100~109점, OPIc IL</li> <li>• 중국어 : 新HSK 5-6급 160~169점, FLEX 500~599점</li> <li>• 독일어 : Goethe-Zertifikat A2, FLEX 500~599점</li> <li>• 일본어 : JPT 500~599점, FLEX 500~599점</li> </ul>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어 : TOEIC 600~699점, TEPS 500~555점, TOEFL iBT 70~79점, TEPS-S&amp;W 45~49점, TOEIC-S 110~119점, OPIc IM1 이상</li> <li>• 중국어 : 新HSK 5-6급 170~179점, FLEX 600~699점</li> <li>• 독일어 : Goethe-Zertifikat B1, FLEX 600~699점</li> <li>• 일본어 : JPT 600~699점, FLEX 600~699점</li> </ul>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어 : TOEIC 700점 이상, TEPS 556점 이상, TOEFL iBT 80점 이상, TEPS-S 50점 이상, TOEIC-S&amp;W 120점 이상, OPIc IM2 이상</li> <li>• 중국어 : 新HSK 5급 180점 이상, 新HSK 6급 18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li> <li>• 독일어 : Goethe-Zertifikat B2 이상, FLEX 700점 이상</li> <li>• 일본어 : JPT 70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li> </ul>	5점

※ 경력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택1)로 증빙되는 근무 연수만 인정된다.

※ 재직경력서, 경력증명서에는 직무가 표기되어야 한다.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7/11


(별표 3) 관련 분야 재직 경력표

모 집 학 과	과 정 명	관 련 분 야 재 직 경 력
방사선학과	AI 의료영상기술 전문기술석사과정	방사선사, 보건직 공무원, 보건 연구원, 방사선기기 업체, 비파괴검사 업체, 군무원, AI의료산업 관련업체, 의무장교 및 부사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 학과 조교 등 유사직무
물리치료학과	생애주기별 스마트 돌봄 물리치료 전문기술석사과정	물리치료사, 통합돌봄 관련 종사자, 병의원 관련 종사자.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 물리치료 및 재활 관련 교육기관의 직원·연구원, 학과 조교 등 유사직무
임상병리학과	실무중심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기술석사과정	임상병리사, 세포병리사, 임상병리 및 바이오 관련 연구소 연구원, 검역원, 보건직 및 의료기술직 공무원, 의무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임상병리관련 센터, 검진센터, 시약 및 의료기 관련 업체 직원, 보험회사 건강심사팀, 학과 조교 등 유사직무
치위생학과	스마트 덴탈 헬스케어 전문기술석사과정	치과위생사, 보건직공무원, 치과관련분야, 치위생학 및 치의학 관련 교육기관의 직원·연구원, 학과 조교 등 유사직무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입학전형 및 학생지원 관리</b> <b>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2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11/11

(별지 제4호)

## 학 력 조 회 동 의 서 (Letter of Consent)

<b>성명 (Name)</b>		<b>생년월일 (Date of Birth)</b>	
----------------------	--	---------------------------------	--

■ 학력 조회 내역

표기 (Mark)	학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어 (English)			
해당국 언어 (Native Language)			
영어 (English)			
해당국 언어 (Native Language)			
영어 (English)			
해당국 언어 (Native Language)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학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I am giving my consent and hereby authorize GHU to verify my degree/enrollment records.)

년(Year)      월(Month)      일(Day)

지원자 성명(Applicant Name) \_\_\_\_\_ 서명(Signature) \_\_\_\_\_

**광주보건대학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 귀하**

 <b>광주보건대학교</b>	<b>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보건대학교 학칙 제35조에 따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 밖 수업(이하 “협동수업” 이라 한다)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협동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심의) 협동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학과장 또는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교 밖 수업 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참가학생 명단(별지 제2호), 강의 계획서,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및 업무 협약서(별지 제7호)를 교무처 또는 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운영) ① 협동수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교원은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협동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수강생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협동수업 운영 후에는 학교 밖 수업 실시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고, 학교 밖 수업 사진(별지 제5호), 학교 밖 수업 만족도 평가 설문지(별지 제6호)를 첨부하여 교무처 또는 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는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b>광주보건대학교</b>	<b>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2/9

(별지 제1호)

## 학교 밖 수업 실시 요청서

과정(학과)	
교과목명	
담당 교수 (성명/연락처)	
수업 일시	
수업 장소	
참가 인원	
<p>붙임 1. 참가학생 명단 1부.  2. 강의 계획서 1부.  3.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서 1부.  4. 업무 협약서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일: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담당교수 :       (인 또는 서명)  책임교수 :       (인 또는 서명)  학 과 장 :       (인 또는 서명) </p> <p style="text-align: center;"><b>광주보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b></p>	


 광주보건대학교	<b>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3/9

(별지 제2호)

## 참가학생 명단

연번	학번	이름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광주보건대학교</b>	<b>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5/9

(별지 제4호)

## 학교 밖 수업 실시 결과보고서


1. 기본사항	
과정(학과)	
교과목명	
운영 목적	
수업 일시	
수업 장소	
참가 인원	
2. 운영 내용	
날짜	수업내용
3. 평가 및 개선사항	
붙임 1. 학교 밖 수업 사진 1부. 2. 만족도 평가 설문지. 끝	
제출일 :       년       월       일	
담당교수 :       (인 또는 서명) 책임교수 :       (인 또는 서명) 학과장 :       (인 또는 서명)	
<b>광주보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b>	

 광주보건대학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6/9

(별지 제5호)

## 학교 밖 수업 사진


수업 사진

 광주보건대학교	<b>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7/9

(별지 제6호)

## 학교 밖 수업 만족도 평가 설문지

평가 항목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본 현장수업은 사전에 제시된 학습목표와 수업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였다.					
2	본 현장수업은 실제 직무 및 임상·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높았다.					
3	수업 일정, 시간 배분, 진행 방식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4	지도 교수 또는 현장전문가는 전문성과 지도 역량을 바탕으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					
5	본 수업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6	본 현장수업을 통해 전공 역량, 실무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7	현장수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8	본 현장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향후 유사한 수업에도 참여하고 싶다.					
<p>※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p> <p>○ 좋은 점</p> <p>○ 개선할 점</p>						

 <b>광주보건대학교</b>	<b>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8/9

(별지 제7호)

## 업 무 협 약 서

‘광주보건대학교’와 ‘000’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광주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가 연합으로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상호 간의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광주보건대학교와 000이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을 포함한 교육·연구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추진과 대학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실무형 R&BD 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 가.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 협력
- 나. 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연계 교육 지원
- 다. 임상현장전문가 및 임상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 라. 학술적 교류 및 연구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 사.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
- 아.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공동 관심 분야


**제3조(협력 방법)** 제2조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 추진 시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b>광 주 보 건 대 학 교</b> <b>글 로 컬 사 업 단</b> <b>단 장</b>	<b>0</b>	<b>0</b>	<b>0</b>	<b>직 함</b>	<b>0</b>	<b>0</b>	<b>0</b>	<b>명</b>
--	----------	----------	----------	------------	----------	----------	----------	----------

 <b>광주보건대학교</b>	<b>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3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9/9

## 업 무 협 약 서

‘000’와 ‘광주보건대학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광주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가 연합으로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상호 간의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0과 광주보건대학교가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을 포함한 교육·연구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추진과 대학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실무형 R&BD 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 가. 학교 밖 수업(협동수업) 운영을 위한 교육 협력
- 나. 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연계 교육 지원
- 다. 임상현장전문가 및 임상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 라. 학술적 교류 및 연구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바.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 사.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
- 아.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공동 관심 분야


**제3조(협력 방법)** 제2조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 추진 시 양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어느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연장 효력을 갖는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기	관	명	광	주	보	건	대	학	교
직	함	0	0	0	단	장	0	0	0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학습경험 학점인정에</b> <b>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4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보건대학교 학칙 제48조에 따라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점인정은 학습경험을 평가하여 보건전문기술대학원 교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3조(대상자 및 기준)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 대상은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②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각 과정의 교육과정에 지정된 내용으로 하며,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및 학점인정 절차) ① 학과 과정별 학습경험 인증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과/과정	자격요건		공통서류	해당증빙
<b>방사선학과</b> (AI 의료영상기술)	택1	미국 초음파 자격 (교과목: AI 융합 초음파 실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교과목: 방사선안전관리)		
<b>물리치료학과</b> (생애주기별 스마트 돌봄 물리치료)	필수	PNF 교육을 받고 보험 청구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120시간 과정 이수)		이수증 사본
<b>임상병리학과</b> (실무중심 바이오 헬스케어)	택1	바이오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해당 업무가 표기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상 생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b>치위생학과</b> (스마트 덴탈 헬스케어)	택1	TDC 인턴십	인턴십 인증서, 해당 교과목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디지털기반 스마트 구강보건교육 실습 이수		
		노인치위생학 및 실습 이수		


②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이내로 한다.

③ 학점인정은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b> <b>학습경험 학점인정에</b> <b>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4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2/4

- ④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신청서(별지 1호)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한 사람에게 한정한다.
  - ⑤ 학습경험평가위원회는 제출 서류와 해당 학과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과의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한다.
  - ⑥ 학습경험평가위원회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별지 2호)의 각 항목별 적격여부가 모두 적격일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⑧ 학습경험평가위원회에서는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별지 2호)를 작성하여 제4조 제1항의 제출서류,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 프로파일을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⑨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에 통보한다.
  - ⑩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된 서류는 심의 후 최종적으로 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 제출한다.
- 제5조(기타) 이 지침 이외에 학습경험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b>광주보건대학교</b>	<b>전문기술석사과정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지침</b>	문서번호	지침-교무-54
		소관부서	교무처
		페이지 수	4/4

(별지 2호)

## 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표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별 작성

학 과		과 정	
학 번		이 름	
학년 · 학기		신청 교과목	

적격 여부 평가표 (O/X)					
학과	과정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적격여부
방사선학과	AI의료영상기술				
학과	과정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적격여부
물리치료학과	생애주기별 스마트 돌봄 물리치료				
학과	과정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적격여부
임상병리학과	실무중심 바이오 헬스케어				
학과	과정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적격여부
치위생학과	스마트 덴탈 헬스케어				

※ 첨부서류: 교과목 프로파일 1부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또는 서명)  
 위    원:                   (인 또는 서명)  
 위    원:                   (인 또는 서명)

**광주보건대학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장 귀하**